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김위상
김성원 · 최보운 · 서천호
구자근 · 정동만 · 최수진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실무상 공동사업자로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투자자들의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사업자 정의에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을 “자(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한다)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u>자</u> 를 말한다.	2. ----- ----- ----- ----- <u>--자(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한다)를-----.</u>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